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감정의뢰처	과천도시공사
건명	불용물품 감정평가(스텝퍼)
감정평가서번호	DB203-0305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 (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경기지사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42, 5층(길양동, 한국산업은행)
TEL : (031)386-6600 | FAX : (031)386-0506 | www.idab.co.kr



(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심진범

이승진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경기지사

지사장 황주태



감정평가액	칠십만원정(W700,000.-)		
의뢰인	과천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목적	취득처분
채무자	-	제출처	과천도시공사
소유자 (대상업체명)	과천도시공사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0.03.06.	2020.03.06.
		작성일	2020.03.09.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액(원)
	동산	2식	동산	2식	350,000	700,000
	합계					<u>₩700,000.-</u>
			- 이 하 여 백 -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Signatures]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역(4호선)"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과천시민회관 별관 2층 헬스장내에서 현재 보관중인 운동기구로서, 과천도시공사의 불용물품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임.

II.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III. 기준가치,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0.03.06.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0.03.06.자로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확인하였음.

IV.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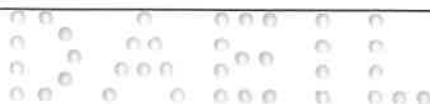
1. 자산의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함.
 - ①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 ②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 ③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2. 본건 운동기구는 규격, 재질, 현상과 재활용 여부 및 동종 유사물건의 거래시세 등을 종합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득이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음.
4. 본건 운동기구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2" 소재 과천시민회관 별관 2층 헬스장 내에서 실사하였으며, 소유자가 제시한 감정평가 의뢰목록 등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유의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V.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동산)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명 칭 (종 류) 구조 · 규격 · 형식 · 용량	제작업체 등록번호 제작일자	수 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가(원)	금액(원)	
	STEPPER(스텝퍼) 모델: 530S 규격(cm): 71(W)×109(L)×175(H) 중량: 60kg 스피드: 10~150ft/min(3~46m/min) 기타부대설비포함.	CYBEX(U,S,A)	2식	-	700,000	취득 2011.03.28
합 계					<u>₩700,000.-</u>	
- 이 하 여 백 -						

동산감정평가요항표

1. 현황

본건 운동기구는 유산소운동을 위한 설비로서 과천시공사 헬스장에서 사용하던 운동기구임.

2. 사용상태

본건은 미국이 원산지인 운동기구로서 가동 중단 및 내구년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용도폐기 결정되었음.

3. 수용장소 및 방법

본건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소재 "과천시민회관 별관 2층 헬스장"내에 보관중임.

4. 기타사항

본 운동기구는 주 활용에는 무난하나, 일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탐문조사됨.

